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8. .
제출자 : 이 천 시 장

□ 개정이유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간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색깔·규격등 (안 제17조 및 제18조)

- 종량제봉투색깔을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생봉과성 및 합성수지 (PE)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제작, 일반용봉투중 10l, 20l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게 제작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안 제20조)

-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다. 수수료의 감면 (안 제23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라. 쓰레기 봉투의 현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함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목중 “종류·재질·규격등”을 “종류·재질·색깔·규격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를 “색깔·용량·크기·두께 및 재질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로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및 합성수지(PE)를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필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얇은 녹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 4와 같다”를 “별표 4 내지 별표 4의6과 같다”로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PE)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봉투의 규격등을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위탁판매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일반용 봉투의”를 “쓰레기봉투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다만, 공동주택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 가격 산정기준 및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별표 1·별표 3·별표 4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 내지 별표 4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소		폐기물관리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담당·팀장 직위·성명	폐기물관리담당 김인영
	담당자 성명·전화	엄선희 (2252)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15조, 제20조관련)

종 별	부과 기준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가 전 류	냉 장 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 레 비 전	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	5,000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콘	264제곱미터형 이상	8,000
		66제곱미터형 이상	5,000
		66제곱미터형 미만	3,000
	가 스 오 븐 렌 지	높이 1미터 이상 높이 1미터 미만	4,000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미터 이상	2,000
	선풍기, 전공청소기 가습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전기밥솥 식기건조기, 타자기 카 세 트, 정 수 기	모든 규격	3,000
	전 축	모든 규격	4,000
	스 피 커	모든 규격	5,000
	컴 퓨 터 모 니 터 (자 판 포 함)	1개당	5,000
	온 풍 기	264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미만	8,000 5,000 3,000
가 구 류	장 농	120센티미터 이상1쪽 120센티미터 미만1쪽	15,000 10,000
	서 랍 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신 발 장	모든 규격	2,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장	모든 규격	4,000
	응 접 셋 트	장의자(3인 이상) 의 자(2인 이하)	5,000 2,000

종 별	부과 기준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가 구 류	침 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캐 비 넷	모든 규격	4,000
	화 일 캐 비 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양 수 책 상	모든 규격	5,000
	편 수 책 상	모든 규격	4,000
	밥 상	4인 미만 4인 이상	3,000 5,000
	옷 결 이	모든 규격	2,000
	의 자	1개당(철재, 목재)	3,000
생 활 용 품	거 실 문 짹	1쪽당	5,000
	액 자	1개당	4,000
	쌀 통	80kg(용량)이상 80kg(용량)미만	4,000 3,000
	거 올	1개당	3,000
	벽 시 계	1m 이상 1m 미만	5,000 3,000
	카 펫 트	1평당	1,000
	장 판 (전기,비닐장판포함)	1평당	3,000
	피 아 노	어프라이드 그 랜 드	10,000 15,000
	올 겐	모든 규격	4,000

종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기 타	항 아 리	1개당	3,000
	옥 상 물 텅 크	톤당	3,000
	자 전 거	유아용	4,000
		어른용	5,000
	보 행 기	1개당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4,000
	세 면 대, 변 기	모든 규격	5,000
	수 족 판	100cm 이상	7,000
		100cm 미만	4,000
	간 판	60cm × 180cm 이상	7,000
		60cm × 180cm 미만	5,000
전 축 폐 기 물	폐 목 재 류	20kg 기준	2,000
	플 라 스 턱 류	10kg 기준	2,000
	인 형, 장남감류	5kg 기준	2,000
전 축 폐 기 물	세제곱미터 또는 톤당	28,000	
매립지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건축폐기물(톤당)	6,800	법 제2조제3호 에서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은 제외
	일반폐기물(톤당)	10,000	

- 주) 1.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수수료이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이외의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함.
3.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3)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크기, 두께, 색깔, 용량 및 용도(제17조제3항 관련)
(생분해성)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호칭두께 (mm)	묶는선 길이	용 도	재질
5	26 × 46.5	0.030	1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HDPE
10	33 × 56.5	0.030	12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20	42 × 69.5	0.035	1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50	56 × 91.5	0.045	19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LLDPE
100	71 × 113.5	0.055	23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 봉투색깔

종류별	색깔	비고
일반용	흰색(반투명)	사생활보호를 위해(10ℓ, 20ℓ)는 짙은녹색등을 넣어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용	노란색	
공공용	짙은청색	

- 비고: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 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 cm}$$

[별표 3의2]

쓰레기 봉투의 크기, 두께, 색깔, 용량 및 용도(제17조제3항 관련)

(일반PE봉투)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	호칭두께 (mm)	묶는선 길이	용 도	재질
5	26 × 46.5	0.025	1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HDPE
10	33 × 56.5	0.025	12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20	42 × 69.5	0.030	1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50	56 × 91.5	0.045	19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LLDPE
100	71 × 113.5	0.055	23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봉투색깔

종류별	색깔	비고
일반용	흰색(반투명)	사생활보호를 위해(10ℓ, 20ℓ)는 짙은녹색등을 넣어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용	노란색	
공공용	짙은청색	

- 비고: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 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 \text{ cm}$$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 관련)

(생분해성)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일반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 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2]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 관련)

(생분해성)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 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공동주택은 아파트명 및 동호수와 성명을 적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한 후 이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쑤시개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 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〇〇〇-〇〇〇〇)

제작업체 고유번호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3]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관련)

(생봉과성)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4]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관련)

(일반 합성수지PE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

-일반용봉투-

배출자	주소	
	성명	

* 배출자의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5]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관련)

(일반 합성수지PE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배출자	주소	
	성명	

*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쑤시개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6]

쓰레기봉투의 사양 (제18조제5항관련)

(일반 합성수지PE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0조)**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1	2	3	4
쓰레기수집 · 운반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①청소예산 재정자립도

$$\frac{\text{봉투판매금액} + \text{재활용품판매수입} + \text{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 + \text{기타수입(과태료등)}}{\text{연간쓰레기총처리비용}}$$

②주민부담율(봉투수수료자립도)

$$\frac{\text{봉투판매금액}}{\text{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비용}}$$

③봉투가격의 산정(최종판매가격)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주)

1. 쓰레기 총 처리비용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과 매립 · 소각등에 반입 처리되는 일련의 비용의 합

2. 주민부담율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과 매립 · 소각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

- **봉투판매금액** : 규격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 공공용봉투 사용을 판매금액으로 환산 한 금액

- **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 처리비용+무상지급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 · 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운반 · 처리비용

3. ℓ 당 처리비용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총처리비용 ÷ 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총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처리비용중 수거·처리원가** :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 대행업체 처리비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등은 제외

4. 봉투제작비: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조달단가 등) 적용

5. 판매이익

9.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ℓ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 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6. 봉투 판매수수료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판매수수료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율})$

6. 봉투 최종판매가격 : 10원 미만 절사

나.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용량	판매가격	용도
5ℓ	90원	일반용 봉투
10ℓ	170원	일반용 봉투
20ℓ	330원	일반용 봉투
50ℓ	800원	일반용 봉투
100ℓ	1580원	일반용 봉투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수수료자립도 20%를 적용한 금액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p>제17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규격등) ① (생략)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 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짙은 분홍색,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황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짙은 청색, 공동주택용은 흰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p> <p>③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p> <p>제1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③ (생략)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은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7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p> <p>제19조의3 <신설></p>	<p>제1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색깔·규격등) ① <현행과 같음>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및 합성수지(PE)를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서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짙은 녹색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③쓰레기 봉투의 색깔, 용량, 크기 투개 재질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p> <p>제1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③(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생분해성수지, 피이등 원료의 적합성, 함량, 물성 등 봉투의 규격은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별표 4 내지 별표 4의6과 같다.</p> <p>제19조의3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p>

현행	기존 정부안
<p>제20조(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함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u> <p><u>②제1항제3호의 판매 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 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u></p> <p>③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 규격봉투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할 수 있다.</p> <p>제23조 (수수료감면)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p><u>②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 관급규격봉투 위탁판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u></p> <p>제20조(생활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u>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u></p> <p><u>②제1항제3호의 판매 가격은 산정기준 및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6과 같다.</u></p> <p>③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체가 쓰레기를 수집·운반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없다</p> <p><u><단서삭제></u></p> <p>제23조 (수수료의감면) ①(현행과 같음)</p> <p>1.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종 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종 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가 전 류	냉장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	5,000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콘	264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미만	8,000 5,000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미터 이상 높이 1미터 미만	4,000 2,000					
	말수기	모든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미터 이상	2,000					
	신설							
	신설							
	신설							
가 구 류	침대	1인용 1인용 메트리스 2인용 2인용 메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장농	120센티미터 이상 1쪽 120센티미터 미만 1쪽	15,000 10,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문간	모든규격	3,000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용접셋트	장의자(3인이상) 의자(2인이하)	5,000 2,000					
	컴퓨터모니터 (자판포함)	모든규격	3,000					
	온풍기	264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이상 66제곱미터형 미만	8,000 5,000 3,000					

현 행 기 준				기 준 기 준			
	종 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단위:원)		종 별	부과기준	부과금액 (단위:원)
가 구 류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현행과 같음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현행과 같음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현행과 같음	
	소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000 5,000			현행과 같음	
	양수책상	모든규격	5,000			현행과 같음	
	편수책상	모든규격	4,000			현행과 같음	
	신설					4인미만 4인이상	3,000 5,000
	신설					옷걸이	모든규격
	신설					의자	1개당(월계,목계)
	신설					거실문짝	1쪽당
생활 용품	신설					액자	1개당
	신설					발통	80kg(용량)이상 80kg(용량)미만
	신설					거울	1개당
	신설					벽시계	1m이상 1m미만
	신설					카펫트	1평당
	신설					장판 (전기,비닐장 판포함)	1평당
	피아노	어프라이드 그랜드	10,000 15,000				현행과 같음
	울전	모든규격	4,00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종별	부과기준	부 과 금 액 (단위:원)	비 고	종별	부과기준	부 과 금 액 (단위:원)	비 고
신설				항아리	1개당	3,000	
신설				육상물탱크	톤당	3,000	
신설				자전거	유아용 어른용	4,000 5,000	
신설				보행기	1개당	3,000	
신설				유모차	모든규격	4,000	
신설				세면대 변기	모든규격	5,000	
신설				수족관	100cm이상 100cm미만	7,000 4,000	
신설				간판	60cm×180cm이상 60cm×180cm미만	7,000 5,000	
신설				폐목재류	20kg기준	2,000	
신설				플라스틱류	10kg기준	2,000	
신설				인형,장난감류	5kg기준	2,000	
건축 폐기물	세계곱미터 또는 톤당	28,000			현행과 같음		
매립지등 일반폐 기물처 리시설 반입수수료	건축폐기물 (톤당)	6,800	법 제2조제3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장은 제외		현행과 같음		
	일반폐기물 (톤당)	10,000			현행과 같음		
주) (생 략)				주) (현행과 같음)			

현 행				기 정 앙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크기, 두께, 색깔, 용량 및 용도 (생분해성)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두께 (mm)	용 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두께 (mm)	묶는선 길이	용 도	재질
5	26 × 34	0.01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5	26 × 46.5	0.030	10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전용	HDPE
10	33 × 40	0.02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공동주택용	10	33 × 56.5	0.030	12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전용	"
20	41 × 49	0.02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공동주택용	20	42 × 69.5	0.035	15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전용	"
50	56 × 67	0.03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공동주택용	50	56 × 91.5	0.045	19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전용	LLDPE
100	71 × 85	0.04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공동주택용	100	71 × 113.5	0.055	23	일반용, 공공용 음식물쓰레기전용	"

□ 봉투색깔		
종류별	색깔	비고
일반용	흰색(반투명)	사생활보호를 위해(10ℓ, 20ℓ)는 엷은 녹색등을 넣어 제작할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용	노란색	
공공용	짙은 청색	

<신 설>	비고 (현행과 같음)
비고 (생략)	

현 행		기 정 안																																								
[별표 3의2] <신 설>		[별표 3의2] 쓰레기 봉투의 크기, 두께, 색깔, 용량 및 용도 (일반PE봉투)																																								
		<table border="1"> <thead> <tr> <th>봉투용량 (l)</th><th>봉투규격 (가로×세로,cm)</th><th>호칭두께 (mm)</th><th>묶는선 길이</th><th>용 도</th><th>재질</th></tr> </thead> <tbody> <tr> <td>5</td><td>26 × 46.5</td><td>0.025</td><td>10</td><td>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td>HDPE</td></tr> <tr> <td>10</td><td>33 × 56.5</td><td>0.025</td><td>12</td><td>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td>"</td></tr> <tr> <td>20</td><td>42 × 69.5</td><td>0.030</td><td>15</td><td>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td>"</td></tr> <tr> <td>50</td><td>56 × 91.5</td><td>0.045</td><td>19</td><td>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td>LLDPE</td></tr> <tr> <td>100</td><td>71 × 113.5</td><td>0.055</td><td>23</td><td>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td><td>"</td></tr> </tbody> </table>					봉투용량 (l)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 (mm)	묶는선 길이	용 도	재질	5	26 × 46.5	0.025	1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HDPE	10	33 × 56.5	0.025	12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20	42 × 69.5	0.030	1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50	56 × 91.5	0.045	19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LLDPE	100	71 × 113.5	0.055	23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봉투용량 (l)	봉투규격 (가로×세로,cm)	호칭두께 (mm)	묶는선 길이	용 도	재질																																					
5	26 × 46.5	0.025	10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HDPE																																					
10	33 × 56.5	0.025	12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20	42 × 69.5	0.030	15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50	56 × 91.5	0.045	19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LLDPE																																					
100	71 × 113.5	0.055	23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공공용,	"																																					
		<p>□ 봉투색깔</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별</th><th>색 깔</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용</td><td>흰색(반투명)</td><td>사생활보호를 위해 (10l, 20l)는 얇은 녹색등을 넣어 제작할 수 있다</td></tr> <tr> <td>음식물쓰레기용</td><td>노란색</td><td></td></tr> <tr> <td>공공용</td><td>엷은 청색</td><td></td></tr> </tbody> </table>					종류별	색 깔	비 고	일반용	흰색(반투명)	사생활보호를 위해 (10l, 20l)는 얇은 녹색등을 넣어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용	노란색		공공용	엷은 청색																									
종류별	색 깔	비 고																																								
일반용	흰색(반투명)	사생활보호를 위해 (10l, 20l)는 얇은 녹색등을 넣어 제작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용	노란색																																									
공공용	엷은 청색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2} + 5\text{ cm}$																																								

현행	기존 정부안												
<p>[별표 4] <u>쓰레기봉투의 사양</u></p> <p>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p>(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일반용봉투-</p> <p>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배출자</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성명</td> <td></td> </tr> </table> <p>*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1.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첨 소 개 <u>(전화 : 30-0335)</u></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배출자	주소			성명		<p>[별표 4] <u>쓰레기봉투의 사양</u> (생분해성)</p> <p>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p>(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일반용봉투-</p> <p>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배출자</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성명</td> <td></td> </tr> </table> <p>*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1.재활용품은 분리배출 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u>(전화 : 000-0000)</u></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자	주소												
	성명												
<p>[별표 4] <u>쓰레기봉투의 사양</u></p> <p>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p>(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p> <p>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배출자</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성명</td> <td></td> </tr> </table> <p>*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공동주택은 아파트명 및 동호수와 성명을 적습니다.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첨 소 개 <u>(전화 : 30-0335)</u></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배출자	주소			성명		<p>[별표 4의2] <u>쓰레기봉투의 사양</u> (생분해성)</p> <p>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p> <p>(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p> <p>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배출자</td> <td>주소</td> <td></td> </tr> <tr> <td></td> <td>성명</td> <td></td> </tr> </table> <p>*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공동주택은 아파트명 및 동호수와 성명을 적습니다. 1.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이쑤시개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3.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p> <p>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u>(전화 : 000-0000)</u></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자	주소												
	성명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p>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u>쓰레기봉투의 사양</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첨 소 계</u> <u>(전화 : 30-0335)</u>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td> </tr> </table>	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첨 소 계</u> <u>(전화 : 30-0335)</u>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p style="text-align: center;">기준 경 안</p> <p>[별표 4의3]</p> <p style="text-align: center;"><u>쓰레기봉투의 사양</u> (생분해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폐기물관리과</u> <u>(전화 : 000-0000)</u>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td> </tr> </table>	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폐기물관리과</u> <u>(전화 : 000-0000)</u>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첨 소 계</u> <u>(전화 : 30-0335)</u>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둑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공공용봉투-													
이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입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 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u>폐기물관리과</u> <u>(전화 : 000-0000)</u>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공동주택용봉투 삭제>													

현

행

[별표 4의4] (신 설)

[별표 4의4] 쓰레기봉투의 사양

(일반 합성수지PE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일반용봉투-

배출자	주소	
	성명	

※ 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적습니다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합니다.

4.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원~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4의5] (신 설)

[별표 4의5] 쓰레기봉투의 사양

(일반 합성수지PE봉투)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ℓ)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배출자	주소	
	성명	

※ 단독주택 및 상가는 주소와 성명을, 공동주택은 아파트 명 및 동호수와 성명을 적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이 봉투에 담아 배출 하여 주십시오.

2. 이후 시개동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버릴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이 천 시 장 (인)

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000-0000)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6] (신 설)	[별표 4의6] 쓰레기봉투의 사양 (일반 합성수지PE봉투)
	<p>이 봉투를 뮤기 위한 부분입니다.</p> <p>(이천시 문장) 쓰레기봉투(○) -공공용봉투-</p> <p>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꼴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시면 3만~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이 천 시 장 (인)</p> <p>연락처 :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 (전화 : 000-0000)</p> <p>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p>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별표 6)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가.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 방법
<p>쓰레기수집·운반비용(1) × 수수료자립도(2) × 제작비(3) × 판매이익(4)</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쓰레기수집·운반비용(1) × 수수료자립도(2) × 제작비(3) × 판매이익(4)</p> <p>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봉투판매금액 + 재활용품판매수입 + 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 + 기타수입(과태료등) 연간쓰레기총처리비용</p> <p>② 주민부담율(봉투수수료자립도) 봉투판매금액 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비용</p> <p>③ 봉투가격의 산정(최종판매가격) l 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l) ×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 판매이익</p>

현 행 방 법	기 준 정 비 율
<p>주)</p> <p>1)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둘카, 밀폐식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한 경우의 수거 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 매립지 및 위생 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p> <p>2)수수료 자립도는 이천시 기준 수수료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p> <p>3)제작비는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를 말한다.</p> <p>4)판매이익은 복권 판매 이익과 같이 9%를 적용,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한다.</p>	<p>주)</p> <p>1. 쓰레기 총 처리비용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매립·소각 등에 반입 처리되는 일련의 비용의 합</p> <p>2. 주민부담율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과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 -봉투판매금액 : 규격봉투판매금액+무상지급봉투, 공공용봉투 사용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p> <p>-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무상지급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p> <p>3. ℥당 처리비용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합산),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총처리비용 ÷ 연간사용된 봉투 총용량) -총처리비용 :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p>

현 행	개 정 안
	<p>- 처리비용중 수거·처리원가 :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경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 대행업체 처리비 등)</p> <p>*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등은 제외</p>
	<p>4. 봉투제작비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조달단가 등) 적용</p> <p>5. 판매이익 9.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ℓ 당 처리비용×봉투 용량(ℓ)×봉투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p> <p>-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times \text{주민부담율} + \text{봉투 제작비}) \times \text{판매수수료요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요율})$</p> <p>6. 봉투 최종판매가격 : 10원 미만 절사</p>
나.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생략)	나.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현행과 같음)